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12호
2.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3. 발의일자 : 2024. 1. 5.
4. 회부일자 : 2024. 2. 7.

II. 제안이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음.
-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6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23년 10월 6일 개정하여 의결함.
- 이에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피·가해 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
2. 교육감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7호)
3. 교육감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4. 2. 14. ~ 2. 18.(의견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5일 김춘곤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12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수립시 피·가해 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피해학생이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 및 운영하며, 학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학교폭력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피해 또한 날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 이에 지난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6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2023년 10월 6일 대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기한 「학교폭력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2항제8호)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2항제8호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가해 학생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4조제2항제8호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7호¹⁾의 ‘분쟁조정’과 개념적 의미에서 유사하며, 현행 조례 제12조²⁾에서는 교육감에게 피·가해학생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중복규정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교육청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7호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과 ‘2024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추진계획’ 그리고 ‘2023학년도 관계조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안 제4조제2항제8호가 상기 조문과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조문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7호 피·가해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갈등조정) 교육감은 피·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동 조례안 제8조제7호는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사항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제3항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안 제10조제6항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규정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관한 사항³⁾과 학교장 및 교감⁴⁾, 그리고 전담기구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 2. 16.).

[표-1]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 교육내용

대상	시간	필수 교육내용	비고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편성 운영 권장 	학급 단위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자체 교육, 직무연수 적극 이수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사항 등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⑩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